

# 한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도입추진방향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위원  
mcho@kiep.go.kr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ygkim@kiep.go.kr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jhkang@hongik.ac.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임.
-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음.
-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특히 한·칠레, 한·ASEAN FTA 등 개도국과의 FTA 체결 및 GSTP, APTA 협정의 확대, 그리고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실시 등 변화된 실정을 고려하여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주요 선진국의 GSP 제도 비교

-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 이들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 176개국, 캐나다 173개국, 일본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함.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EU와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GSP 졸업규정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졸업규정이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수혜국 자격을 상실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원산지규정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고 엄격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

- 최근 EU는 GSP 개정 추진안에서 졸업기준을 다소 완화시켰으며, GSP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개도국에 보다 완화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음.

■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정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임.

-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GSP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 다만 GSP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 졸업기준을 완화시키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 패턴 분석

■ 기본적으로 GSP의 공여는 수입 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한-칠레, 한-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하였음.
- 현재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3.5%), EU(5.1%), 일본(4.4%)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은 높은 편이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GSP 특혜 부여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산품의 경우 평균 실행세율의 3배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의류/직물, 가죽제품, 운송기기, 고무/화학 등 일부 산업에는 제조업의 평균세율을 웃도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GSP 특혜 부여시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됨.
- 특히 의류/직물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개도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만큼 이들 품목의 개방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수준의 실행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해당 품목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 품목은 통상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자유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GSP 도입을 위한 수혜품목 선정시에도 FTA별 양허제외 품목과 민감품목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그러나 농산품과 섬유 제품의 경우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GSP 수혜 배제는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됨.
- 한편 우리나라의 GSP 도입시 더욱 큰 문제는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우리측 양허가 GSP 제도의 유용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나라의 GSP 제도에 따른 수혜국 및 수혜품목의 선정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GSP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와 수혜대상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혜대상국과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영향을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또한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부품목별 예상수입 증가액을 추정해 보았음.
- GSP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역관계가 많은 국가들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수록 그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GSP 도입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가격이 하락한 수입재가 국내물가를 하락시키고, 수입재로 대체된 국내 비교열위 산업의 자원들이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가 증가하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 하는 GSP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GSP 수혜대상국이 저소득 또는 중하위 소득국가까지인 경우에는 모든 산업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 수혜대상국을 중상위 소득국가나 중국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농업과 섬유를 제외해도 실질 GDP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GSP 도입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개방 산업의 범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급적 많은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농

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로 GSP 혜택을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저소득 국가의 실질 GDP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섬유산업이 특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수혜대상국을 중하위 소득국가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과 섬유를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해야만 저소득국가 및 중하위 소득국가는 물론 중상위 국가까지 모두 실질 GDP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GSP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후생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 GDP에 대한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농업과 섬유를 제외하는 경우보다 전 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경우 수혜대상국의 후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대상국을 확대할수록 기존 수혜대상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되는 대상국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GSP 도입에서 제외되는 국가군은 GSP 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생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농업과 섬유를 제외하고 중상위 소득국가까지 GSP 특혜를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혜대상국의 후생이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내에서 농업 및 섬유 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이를 제외한 GSP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한편 GSP 도입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전 산업에 대한 특혜가 제공될 경우, 수입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곡물은 수입의 증가로 국내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중국이 수혜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섬유산업의 생산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이는 곡물의 경우 개방으로 인한 생산 감소는 불가피하나, 기

타 농업 및 섬유업의 경우 오히려 개방이 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World Bank의 SMART 모형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분석과 마찬가지로 수혜대상국별, 특혜산업별 시나리오를 구성, 관세 20% 삭감에 따른 예상 수입증가액을 품목별로 추정해 보았음.

  - 최빈국을 대상으로 GSP 특혜를 제공할 경우, 경질석유 및 조제품(1,600만 달러), 전선가죽(700만 달러), 참깨(300만 달러) 순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코코아콩(59만 달러), 시가 등 껌련(약 20만 달러) 순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이들 국가에 대한 GSP 공여에 따른 농업 및 섬유산업에 대한 수입 증가 폭이 크지 않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중하위 소득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농업의 개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중상위 소득국가군에도 농업 부문의 파급 효과가 여타 국가군에 비해 클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국내 농업에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로 수혜대상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수혜대상국이 확대됨에 따른 수입 급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될 경우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대비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본 분석의 한계점은 APTA 및 GSTP 등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20%의 관세삭감 시나리오에 기초한 결과로, 보다 적극적인 특혜수준을 제공하게 될 경우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그러나 20% 관세감축이라는 보수적인 시나리오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SP 공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GSP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 정책 시사점

- 위의 1), 2), 3) 세 가지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요약하면, 먼저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운영과정을 검토하여 GSP 취지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즉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운영해 나가야 함.
- 그러나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한-칠레, 한-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PTA 및 GSTP 협정의 경우, FTA와 달리 전체 품목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간 합의된 한정된 품목에 한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두 특혜제도의 새로운 라운드가 발효될 경우 특혜가 중복되는 품목수가 3천여 개에 달함.
- 이들 품목의 경우 이미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된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시에도 수혜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중복 특혜, 그리고 GSP 특혜의 효과성에 따른 문제점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에 실질 GDP와 후생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방향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함.
- 먼저,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중 어떠한 단계의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 ① 현재의 관세법 제76조 제1항의 근거규정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식과 ②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의 형식으로 GSP 법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음.
  -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 수렴과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임. 시행령의 형식이 되건, 특례법의 형식이 되건 GSP 제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대상 국가의 선정, 대상 물품의 선정, 지정 절차, 지정 요건, 원산지 규정,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GSP 대상국가의 선정과 관련하여, ①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국민소득 수준 등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② FTA를 포함한 특혜

제도의 체결 여부가 고려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③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GSP 수혜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GSP 수혜품목의 수와 특혜폭 그리고 선정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물품의 선정은 국내 생산 물품과의 경쟁관계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일단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이를 폐지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대상물품의 수와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GSP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GSP 수혜를 제한시키는 조치의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GSP 제도의 안정성(stabil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제도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GSP 운영에 필요한 세부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원산지 규정인데, 원산지규정이 GSP에 따른 특혜를 개도국에 한정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엄격하게 규정될 경우 GSP 혜택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국가에서의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단순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며, 엄격한 원산지 증명서 관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국가기관이나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기관발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빈국의 경우는 이들 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산지 증명서 요구를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GSP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GSP 도입 시나리오를 살펴봄.

-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

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과 우리나라가 APTA, GSTP 협정 등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의 참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GSP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단계적 도입 시나리오는 GSP 수혜국 및 수혜대상품목의 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빈국과 저소득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자재 및 섬유제품 등 제한적인 품목에 대한 GSP 공여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식임.
-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에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우려가 문제된다면 수혜대상국을 저소득 국가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단계적 실시를 통해 GSP 제도 도입 초기에는 농업 부문에 대한 개방 폭을 최소로 설정하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수혜대상국과 수혜대상 품목을 함께 확대하는 방식의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에 제약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품목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도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